

| | |
|-----------|--------------------|
| 의안번호 | 제747호 |
| 의결 연월일 | 2017년 월 일 (제 회) |

충청북도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발의자 | 장선배 의원 등 7인 |
| 발의연월일 | 2017년 11월 20일 |

충청북도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선배 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 번호 | 747 |
|----------|-----|

발의연월일 : 2017년 11월 20일
발의자 : 장선배, 임순목, 이광진,
강현삼, 김봉희, 박병진
이숙애

1. 제안이유

미세먼지로 인한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도와 사업장의 책무를 정하고, 환경보전계획 수립 시에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용어의 정의에 일조 방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추가(안 제3조)
- 나. 도의 책무 중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4조)
- 다. 사업자의 책무에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위한 사항 신설(안 제6조)
- 라. 환경보전계획 수립 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11조)
- 마. 인용 법률 조문 수정(안 제12조, 안 제13조)

바. 기타 용어 정비 등(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안 제7조, 안 제12조
부터 제19조까지, 안 제21조, 안 제25조, 안 제26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협의 : 바이오환경국 환경정책과와 협의

라. 입법예고 : '17. 11. 8. ~ '17. 11. 13.(의회 홈페이지)

충청북도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환경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를 “충청북도”로, “도 및”을 “충청북도 및”으로, “도민의”를 “충청북도민의”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도의”를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로, “도민”을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모든 시책”을 “모든 시책”으로 한다.

제3조제2호 중 “모든생물”을 “모든 생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소음·진동·악취등”을 “소음·진동·악취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소음·진동·악취등”을 “소음·진동, 악취, 일조 방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등”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보전등”을 “보전 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예방등”을 “예방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지원에 관한 사항

제4조제1항제10호(중전의 제9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따로 조례”를 “조례”로, “정”을 “따로 정”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시·군의 책무)”를“(시·군 등의 책무)”로 한다.

제6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사업자는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환경개선과 화석연료 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도하거나”를 “지도하거나”로 한다.

제11조의 제목“(환경보전종합계획의 수립)”을“(환경보전계획의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환경보전종합계획”을 “환경보전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호”를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환경보전”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계획 등 환경보전”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보전종합계획”을 “환경보전계획”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2조제3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역환경기준은 조례로 따로 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2조제3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은 조례로 따로 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적정”을 “적절”로,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를 “주는 영향을 미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절차등”을 “절차 등”으로, “따로 조례”를 “조례로 따”로 한다.

제15조 중 “적정”을 “적절”로, “강구하여야”를 “마련하여야”로 한다.

제16조 중 “강구하여야”를 “마련하여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강구하여야”를 “마련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따로 조례”를 “조례로 따”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강구하여야”를 “마련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지사”를 “도”로, “의한 조치를 강구하여야”를 “따른 조치를 마련하여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강구하여야”를 “마련하여야”로 한다.

제21조 중 “강구하여야”를 “마련하여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따라 조례”를 “조례로 따”로 한다.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응하여야”를 “협조하여야”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국가 및 타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생략)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생략)

제4조(도의 책무) ① 도는 환경보전 및 새로운 지역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적인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 3. (생략)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1. (현행과 같음)

2. -----
----- 모든 생물 -----

-----.

3. -----
----- 소음·진동·악취 등 -----

-----.

4. -----

----- 소음·진동, 악취, 일조 방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등 -----
-----.

5. (현행과 같음)

제4조(도의 책무) ① -----

----- 각호 -----

-----.

1. ~ 3. (현행과 같음)

4. -----

경관의 보전등에 관한 사항

5. (생략)

6. 지구온난화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등의 지구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7.·8. (생략)

<신설>

9. 기타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② (생략)

③ 도는 제1항에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시·군의 책무) (생략)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 ~ ④ (생략)

<신설>

제7조(도민의 권리 및 책무) ①·② (생략)

----- 보전 등-----

5. (현행과 같음)

6. -----
----- 예방 등-----

7.·8. (현행과 같음)

9.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지원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② (현행과 같음)

③ -----

조례 ----- 따로 정
-----.

제5조(시·군 등의 책무) (현행과 같음)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사업자는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환경 개선과 화석연료 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도민의 권리 및 책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모든 도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1. 도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2. ~ 4. (생략)

제11조(환경보전종합계획의 수립)

① 도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경보전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종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4. (생략)

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 사항

③ 도는 환경보전종합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도민과 시장·군수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 및 충청북도 환경정책위원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생략)

③ -----

----- 각 호 -----
-----.

1. -----
----- 지도하거나 -----

-----.

2. ~ 4. (현행과 같음)

제11조(환경보전계획의 수립) ①

----- 환경보전계획 -----
-----.

②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 -----
-----.

1. ~ 4. (현행과 같음)

5. ---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계획 등 환경보전 ---

③ -- 환경보전계획 -----

-----.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지역환경기준의 설정) ①

도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도의 환경 여건을 고려한 지역환경기준을 설정하고 이의 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환경기준을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3조(지역배출허용기준의 설정)

① 도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각 환경관련 법령에 의거 환경부장관이 정한 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4조(환경영향검토) ①

도는 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업에 대하여 환경보전에 대한 적정한 배려가 이루어지고 지역환경기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사업의 실시가 환

제12조(지역환경기준의 설정) ①

----- 제12조제3항에 따라 -----

-----.

② 제1항에 따른 지역환경기준은 조례로 따로 정한다.

제13조(지역배출허용기준의 설정)

① ----- 제12조제3항에 따른 -----

-----.

②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은 조례로 따로 정한다.

제14조(환경영향검토) ① -----

----- 적절 -----

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의 대상사업 및 절차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5조(규제조치) 도는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6조(환경시설의 설치·관리등) 도는 폐기물 및 하수처리시설, 대기, 수질, 토양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 등 환경시설의 입지 확보와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7조(자연환경의 보전) ① 도와 도민의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에 비추어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 주는 영향을 미리 -----

-----.

② 제1항에 따른 -----
----- 절차 등 -----
-- 조례로 따--.

제15조(규제조치) -----

-- 적절-----
----- 마련하여야
--.

제16조(환경시설의 설치·관리등) -----

----- 마련하여야
--.

제17조(자연환경의 보전) ① -----

----- 각 호-----
-----.

1. ~ 3. (생략)

② 도는 공원·녹지의 설치등 자연환경의 조성 및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자연환경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8조(자원의 순환적이용 등의 추진) ① 도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도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에 있어서 자원의 순환적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타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제1항에 의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9조(도민참여) ① 도는 환경보전시책 결정·집행·평가 등의 환경행정에 도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21조(환경교육 및 홍보) 도는 시·군 또는 경제자유구역청과

1. ~ 3. (현행과 같음)

② -----

----- 마련하여야 --.

③ -----
----- 조례로 따--.

제18조(자원의 순환적이용 등의 추진) ① -----

마련하여야 --.

② 도-----

----- 따른 조치를 마련하여야 ---.

제19조(도민참여) ① -----

----- 마련하여야 --.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환경교육 및 홍보) -----

교육기관 기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도민 및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5조(환경보전기금의 설치) ① (생략)
②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라 조례로 정한다.

제26조(환경백서) ① (생략)
② 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3. (생략)
③ 도는 제1항의 환경백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련 기관 및 시·군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에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기관 및 시·군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7조(국가 및 타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생략)

----- 마련 하여야 --.

제25조(환경보전기금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조례로 따-----.

제26조(환경백서) ① (현행과 같음)
② ----- 각 호-----.
1. ~ 3. (현행과 같음)
③ ----- 협조하여야 --.

제27조(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 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4.6., 2007.5.17., 2009.12.29., 2011.7.14., 2017.4.18.>

1. <생 략>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생 략>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가. 지역개발사업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라. 지방도(地方道), 시군도의 신설·개수(改修) 및 유지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바.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사. 자연보호활동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카. 도립공원·군립공원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타.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파.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5. <생략>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과

그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환경보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환경보전계획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유지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계획과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계획과의 연계방안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환경보전계획과 국토계획의 연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범위, 연계방법 및 절차 등을 국토교통부장관과 공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환경기준의 설정) ① 국가는 생태계 또는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환경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환경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② 환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해당 지역의 환경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제1항에 따른 환경기준보다 확대·강화된 별도의 환경기준

(이하 "지역환경기준"이라 한다)을 설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 ④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3항에 따라 지역환경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